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07-17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0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23859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주식회사 C
4. 주식회사 D
5. 주식회사 E
6. F
7. G
8. H

피 고 1. I 주식회사
2. J

변 론 종 결 2013. 4. 16.

판 결 선 고 2013. 5. 9.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794,000원, 원고 B에게 5,427,000원, 원고 주식회사 C



에게 568,500원, 원고 주식회사 D에게 1,312,500원, 원고 주식회사 E에게 249,300원, 원고 F에게 17,775,000원, 원고 G에게 54,000,000원, 원고 H에게 74,23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1. 20.부터 2013.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392,000원, 원고 B에게 7,236,000원, 원고 주식회사 C에게 758,000원, 원고 주식회사 D에게 1,750,000원, 원고 주식회사 E에게 332,400원, 원고 F에게 23,700,000원, 원고 G에게 72,000,000원, 원고 H에게 98,98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들은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이다.
- (2) 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기계 제조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



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J은 2000. 3. 28.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 및 형사처벌

(1) 피고 J은 일자 불상경부터 2012. 2. 15.까지 화성시 K에 있는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이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별지 목록 중 'SW이름'란 기재 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복제수량'란 기재 각 수량과 같이 복제한 후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 J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복제, 설치, 사용하여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이 적용되어, 피고 회사는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각 저작권법위반으로 2012. 8.경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12. 8. 22. 이 법원 2012고약11245호로 각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J은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설치,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J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그 대표자인 피고 J이 그 직무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위와 같은 피고들의 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배상할 원고들의 손해액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소정의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복제수량에 그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저작권자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민법 제750조),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저작권자가 그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도 있는데(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여기서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다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컴퓨터프로그램의 판매가격은 제조원가, 유통비, 일반관리비 등 제반 비용에 이윤이 더해져 결정되는 것으로서, 판매가격 전체를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인정한다면 원고들이 실제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손해액을 인정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판매가격을 컴퓨터프로그램의 통상적인 사용대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저작권법 제126조 적용 여부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바(저작권법 제126조),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은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위 주장 외에 통상적인 사용대가의 산정에 관한 어떠한 주장이나 입증도 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이나 피고들이 저작권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액 또는 원고들이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액수를 추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와 같은 법인이 일정 수량 이상의 컴퓨터프로그램을 구입하면 일반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 점, ② 일반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신버전이 출시되어 구버전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므로 무단 복제 및 설치, 사용 등 저작권 침해행위가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원고들의 저작권을 최초로 침해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피고들이 단속을 당한 2012. 2. 15.경에는 이 사건 각 프로그램 중 일부는 이미 신버전이 출시되어 구버전의 가격은 하락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재산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침해되는 이익이나 행위형태에 관계없이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침해행위로 인한 현실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손해로 파악하는 이른바 차액설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른바 paid-up 방식[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사한 CD와 그 사용조건 등이 적힌 서면 등이 함께 일체로 포장된 정규복제품을 사서 그 포장을 개봉하거나, 인터넷상에서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컴퓨터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컴퓨터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계약에 동의하는 버튼을 누를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하고, 고객이 정규복제품을 컴퓨터의 내부기억장치에 설치(인스톨)하여 복제한 다음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는 계약형태로, 고객은 한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컴퓨터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의 이용허락에서는 위법사용기간에 대응하는 손해 부분에 한정하여 배상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프로그램의 내구연한에 대한 위법사용기간의 비율에 정규복제품의 가격을 곱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결론을 인정하게 되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행위가 발각된 경우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소액의 손해배상을 하면 무방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위법한 복제행위가 만연하게 될 수 있는 점, ④ 원고들이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이익은 권장소비자가격 내지 판매가격에서 제조원가, 유통비,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도 권장소비자가격 내지 판매가격에 대한 일정 비



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입은 각 손해액은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판매가격에 복제수량을 곱한 금액의 3/4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피고들이 단속을 당한 2012. 2. 15.경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판매가격은 별지 목록 중 '소비자가' 란 기재와 같고, 여기에 각 복제수량을 곱한 금액은 원고 A가 2,392,000 원, 원고 B가 7,236,000원, 원고 주식회사 C가 758,000원, 원고 주식회사 D가 1,750,000 원, 원고 주식회사 E가 332,400원, 원고 F가 23,700,000원, 원고 G가 72,000,000원, 원고 H가 98,980,0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A에게 1,794,000원(= 위 2,392,000원 × 3/4), 원고 B에게 5,427,000원(= 위 7,236,000원 × 3/4), 원고 주식회사 C에게 568,500 원(= 위 758,000원 × 3/4), 원고 주식회사 D에게 1,312,500원(= 위 1,750,000원 × 3/4), 원고 주식회사 E에게 249,300원(= 위 332,400원 × 3/4), 원고 F에게 17,775,000 원(= 23,700,000원 × 3/4), 원고 G에게 54,000,000원(= 위 72,000,000원 × 3/4), 원고 H에게 74,235,000원(= 위 98,980,000원 × 3/4)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1. 2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5.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07-17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이광현

 판사 이정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07-17

별지

목 록

(목록 삭제)

끝.